

26년 경기도 우수IP 검증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기술·개념 검증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가능성 확인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IP검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경기도지사 ·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우수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기술·개념 검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 경기도 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및 전략수립, 기술검증 등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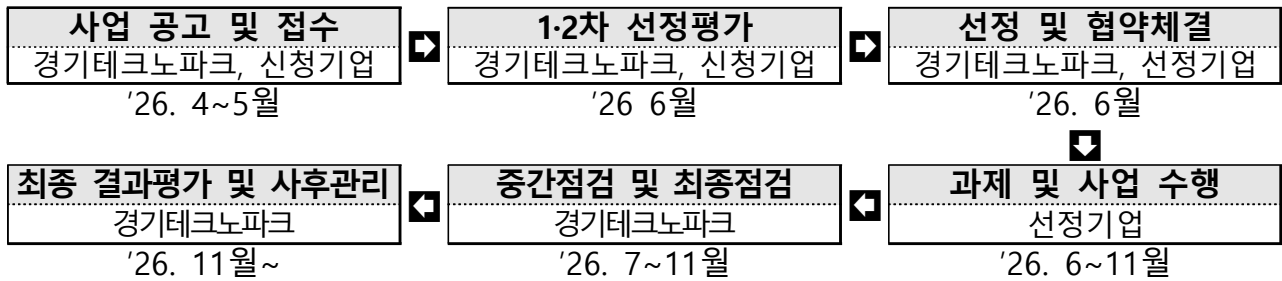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경기도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르며 확인서 제출 필수
 - 신청 기술을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계획을 보유한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관련 계획수립 완료 또는 현재진행 중이고 TRL 6단계 이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 TRL 단계는 기업이 신청한 단계 수준을 바탕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해 심사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며 TRL 단계별 수준은 아래 표를 참조

[TRL 단계 기준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기초이론 / 실험	아이디어 등 개념 정리	실험실 규모의 기본 성능검증	실험실 규모의 핵심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파일럿 규모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사업화

□ 추진일정(안)



2.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관리(최소 300만원) + 기술검증(최대 1,500만원)
- 1,800만원 한도 맞춤지원 : 필수 항목 + 선택 항목(1개 이상 선택 필수)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식재산권 관리 지원 (필수)		· 출원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지원 · 국내외 출원, OA, 등록, 연차료 등 실비	최소 300만원
기술 검증 지원 (선택)	기술경영 컨설팅	· 특허전략수립, 국내외 시장조사, 기술가치평가, 기술 경영컨설팅, 투자유치컨설팅 등	건당 최대 1,200만원
	오픈 이노베이션 POC	· 문제해결형 PoC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해결 방식 제안을 요청한 구체적인 문제해결 기술 검증 (Top-Down 방식) · 기술검증형 PoC : 창업기업의 우수 혁신 기술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Bottom-Up 방식의 기술검증 지원	건당 최대 1,500만원
	인증/시험	· 신청 기술과 관련된 특허 적용 대상 시스템·제품 대상 인증획득/시험 지원	건당 최대 300만원
	연구역량강화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컨설팅 등	최대 100만원

- 자부담 금액은 총사업비의 20%(현금) 이상(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
- 부가세는 총사업비 산출에서 제외(총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 계산)
- 예) 최대지원금 1,800만원 기준 자부담 금액 최소 450만원(총사업비 2,250만원의 20%)
- 부가가치세는 지원금 및 총사업비 계산에서 제외함
- 지식재산권 관리 지원은 당해연도 지출 건에 한하여 사업 협약 이전에 지출된 건도 지원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납부확인서 등 증빙 필수
- 지원대상은 직접사업비(재료비, 외주용역비, 인증/시험비, 장비임차료, 데이터활용비, 시설사용료 등)만 인정되며, 인건비나 간접비(공과금, 자산취득비, 통신비, 사무용품, 출장비, 금형제작 등)는 제외됨

- 지원대상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판단함
- 지식재산권 관리 지원의 대리인 비용은 아래 표의 지원 한도를 따름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국내 출원	특허	180 만원	해외출원	특허(일본)	354 만원
	실용신안	102 만원		특허(중동,캐나다,브라질,러시아,호주,싱가폴)	420 만원
	상표	42 만원		특허(동남아/기타)	252 만원
	디자인	48 만원	해외 OA	미국	246 만원
국내OA	특허 등	40 만원		유럽	210 만원
해외출원	PCT	228 만원		중국·일본·특수국	120 만원
	상표	210 만원	해외등록	기타	78 만원
	디자인	240 만원		미국	216 만원
	특허(미국)	402 만원		유럽	318 만원
	특허(유럽)	570 만원		중국, 일본, 기타	120 만원

□ 유의사항

- 사업 기간 중 본사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지원금을 초과하는 사업비 및 사업 중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 기업 부담
-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 시기와 무관하게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이 있거나 향후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추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제출서류

항 목		비 고
필 수	①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양식 별도 첨부(신청서 내 해당 붙임파일 포함)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양식 별도 첨부(신청서 내 해당 붙임파일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④ 중소기업 확인서	- 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가능
	⑤ 가점증빙서류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경기도 RISE 관련 지원 사업 선정 증빙자료 : 가점부여
선 택	⑥ 기타 증빙서류	- 보유 지식재산권 증빙서류(특허출원서, 등록증 등)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

□ 신청방법

- 공고방법: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www.gtp.or.kr)
- 접수기간: 2026. 4. 30. ~ 2026. 5. 29. 23:59 까지
- 접수방법: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접수 (pms.gtp.or.kr)

※ 신청인(신청기업)은 본 공고, 신청서, 붙임서류, 제출방법 등과 관련한 일체를 숙지하여야 하고, 서류누락·오기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 문의처

담당자	주소	전화	이메일
이경민 주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317호 경기지식재산센터	031-500-3042	min1090@gtp.or.kr

4. 선정평가 기준

□ 선정평가

○ 평가기준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 (정량)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기준 출원·등록 건당 1점)	5
	· (정성)지식재산권(등록 가능성, 유사 기술 여부 등)	20
	· (정성)기술가치(혁신성, 우수성, 독창성, 우위성, 완성도 등)	25
사업성	· (정성)사업비 사용계획	15
	· (정성)목표시장(시장규모, 판매가능성, 진입장벽 등)	15
	· (정성)기업역량(매출액, 연구개발능력, 사업화 계획 등)	20
(가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RISE 사업 유관기업(각 2.5점)*	(5)
	경기도 전략산업 해당 업종**	(5)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RISE 관련 지원사업 선정 결과 증빙으로 확인

**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조에 해당 산업을 선정위원회에서 확인

○ 평가방식

- 1차 서류검토(자격요건 적부 및 서류 진위 여부 등 확인)
- 2차 서류심사(전문가를 통한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 일체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평가 대상 서류는 기업이 사업 기간 내 최종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자격요건 검증에 대한 단순 증빙은 1차 서류검토 전 보완 가능)

○ 범위반 여부 검토(2차 서류심사를 통한 선정기업 조회)

○ 참여자격 제한사항

- 공고일 마감 후 1차 서류검토 시까지 자격 및 신청 기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불가인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시효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당해 연도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기술지원 사업에서 동일과제(기술)로 지식재산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 11개 법률*(2년 이내) 범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자(기업)의 경우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선정 후 과거 범위반 또는 신규 범위반 확인시 사업취소보조금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본 과제의 선정 시, 11개 법률 위반사항 증빙 관련 요청자료 제출 필수.

- 단 11개 법 위반 사실 중 경미한 47개 범위반 행위(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예정 행위)에 대하여 조건부 유예 적용하여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제출 시 감점 미적용 ([참고] 유예대상 목록 참조)

※ 이행각서 미제출 시 유예없이 총점의 20% 감점 적용

적용법률		범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비고
I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조 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의결 조회 위반사실 여부 조회	선정기업 일괄조회 (신청자는 동의서만 제출)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조 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지방청 범위반사실 여부 조회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소관기관) 환경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조 회) 환경부,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범위반사실 여부 조회	
IV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범위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조 회)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범위반사실 여부 조회	과제선정 후 협약시 제출

※ 위와 관련하여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외한 범위반여부 조회는 동의서 기반으로 일괄조회

※ 미리 신고하지 않은 법률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3년동안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자 및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전담기관(경기테크노파크)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참고] 법위반 사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경기도고시 제2026-8호)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24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5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40	물환경보전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참고] 법위반 사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경기도고시 제2026-8호)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43	물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45	물환경보전법	•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47	지방세기본법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